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0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증축공사의 건

- 1985년 건립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2,3층 확장 및 전층 공간 재구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증축공사 건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비 고
소 재 지	건물 취득현황(㎡)		단가 (천원/㎡)	금 액	
영등포동3가 19-3	증축후 면적합 : 621.36 기 존 : 546.24 <u>증 축 : 75.12</u>	영등포구	2,882	1,790,581	수평증축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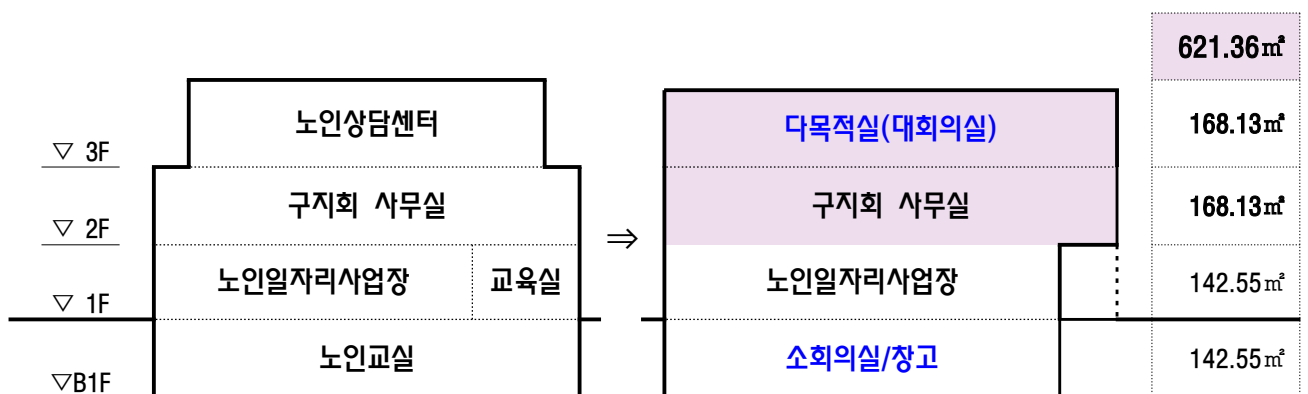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억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됨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영등포로 42길 21-9)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필로티를 활용하여 2,3층 75.12㎡ 수평 증축,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전층 리모델링 후 재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시설 규모는 대지면적 280.23㎡, 연면적 546.24㎡, 지하 1층~지상3층에서 수평 증축 후 연면적이 621.36㎡로 75.12㎡ 늘어나며, 건폐율은 50.87%에서 법정 허용치 최대인 60%로 늘어나게 됨.
-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은 1985년 건립 후 35년이 경과되어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특히 주 이용자가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과 안전상 문제가 있어 그 점을 해소하고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층의 노인상담센터를 이전하여 대회의실을 겸한 다목적실을 설치할 예정임.
- 공간 재배치(안)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 세부 사업별 소요예산은 구조안전진단용역비 1,500만원, 설계비 7,500만원, 증축 및 리모델링, 철거,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15억 6,500만원, 감리비 2,800만원, 집기구입비, 사무실 이전비 및 임대료 등 부대비용 1억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노후되고 불편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재배치로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취소포함)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